

검토보고서

안건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	기획예산과	1

(2012. 10. 22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[전문위원 명 금 길]

1. 안 건 명
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10월 9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가. 2012년 10월 15일

나. 의안번호 : 12-82

4. 관련근거

가. 「지방자치법」

나.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

동 조례안은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 등의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입법예고·공포 등 단위업무별로 구분·운영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통합하여 일련의 입법절차가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등 관련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.

< 개요 >

동 조례안은 전문 제6장제25조 및 부칙 제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,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, 제2장에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, 제3장에서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, 제4장에서는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, 제5장에서는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, 제6장에서는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, 그리고 부칙에서는 경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< 주요내용 >

- (1)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 자치법규 제·개정시 20일 이상 입법 예고하되,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,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,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생략하도록 함.
- (2)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 자치법규 발의안 및 주민청구조례안이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,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이거나,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미제출 하도록 함.

- (3) 안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 자치법규의 공포는 공포전문을 붙여 공포
하되 공포일은 구보 발행일로 함.
- (4) 안 제22조에서는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.
- (5) 안 제24조에서는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의 수 범위를
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/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.
- (6) 부칙에 관련 조례인 「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」, 「서울
특별시마포구조례·규칙등 공포에관한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
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」 폐지함.

< 검토의견 >

동 조례안은 단위업무별로 구분·운영되고 있는 각각의 현행 조례들을 통합
하여 입법 절차가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
입법예고 절차, 공포 및 시행, 자치법규의 정비,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
청구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·운영하여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,
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
조달 방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입법예고 및 우리 구
조례·규칙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